

第256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5 號

國會事務處

2005年12月8日(木) 午後 2時 30分

議事日程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갑배) 선출안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영조) 선출안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신광수) 선출안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경남) 선출안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범) 선출안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하광룡) 선출안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준선) 선출안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택) 선출안
9.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황성재) 추천안
10.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오용석) 추천안
1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손범규) 추천안
1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13.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不動産登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犯罪被害者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
17. 民法 일부개정법률안
18.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行政規制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報勳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23.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靑少年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25.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公社債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33.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7.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41.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原子力法 일부개정법률안
43.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4. 기상관측표준화법안
4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電氣通信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電子署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전자법 일부개정법률안
51. 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5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53. 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4. 情報通信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55.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56.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58. 導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船舶職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61.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6. 騒音·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
67.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의設立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8.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70.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
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
73.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75. 技能獎勵法 일부개정법률안
7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職業安定法中改正法律案
78.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
79. 技能大學法 일부개정법률안

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81.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8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道路法 일부개정법률안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女性發展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87.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88.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89.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附議된案件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갑배) 선출안(의장 제의) 6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영조) 선출안(의장 제의) 6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신광수) 선출안(의장 제의) 6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경남) 선출안(의장 제의) 6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범) 선출안(의장 제의) 6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하광룡) 선출안(의장 제의) 6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준선) 선출안(의장 제의) 6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택) 선출안(의장 제의) 6
9.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황성재) 추천안(의장 제의) 6
10.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오용석) 추천안(의장 제의) 6
1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손범규) 추천안(의장 제의) 6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8
1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최용규·노희찬 의원 외 167인 발의) 8
13.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14. 不動産登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15.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16. 犯罪被害者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7. 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8.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19. 行政規制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20.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22. 報勳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23.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
24. 靑少年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신학용·박상돈·유승민·이재오·이시중·심재덕·배일도·서재관·이상경·엄호성·심재철·이해봉·안병엽·김현미·노현송·안상수·고조홍·손봉숙·김원웅·오제세 의원 발의) 12
25.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3
27.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3
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유기준·나경원·

안택수 · 엄호성 · 김정권 · 김재원 · 김영선 · 박재완 · 안상수 · 이해봉 의원 발의)	13
29.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4
30.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4
31. 公社債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4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5
33.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34.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35.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37. 責任運營機關의設置 · 운영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38.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3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17
4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7
41.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42. 原子力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43.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17
44. 기상관측표준화법안(정부 제출)	17
4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혜석 의원 대표발의)(서혜석 · 배일도 · 엄호성 · 이윤성 · 최규성 · 이영호 · 이근식 · 김태년 · 황우여 · 김우남 · 우제창 · 조정대 · 박재완 · 조일현 · 이은영 · 신기남 · 임종석 · 한병도 · 정청래 · 우제항 · 심재철 · 김종률 · 주승용 · 이광철 의원 발의)	19
46. 電氣通信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19
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19
48. 電子署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19
49. 정보격차해소에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20
50. 전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51. 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이종걸 · 홍창선 · 유승희 · 권선택 · 강성종 · 류근찬 · 심재엽 · 안병엽 · 우제항 · 진영 의원 발의)	20
5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0
53. 郵遞局預金 · 保險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이성권 ·곽성문 · 정의화 · 이혜훈 · 김영선 · 김정부 · 김정훈 · 정문헌 · 강재섭 의원 발의)	22
54. 情報通信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 김재원 · 박재완 · 심재철 · 권경석 · 곽성문 · 안상수 · 김성조 · 정갑윤 · 이상득 · 임인배 · 배일도 · 이상배 · 고조홍 · 엄호성 · 이인기 의원 발의)	22
55.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이광철 · 김태홍 · 정청래 · 이은영 · 우상호 · 이미경 · 김재홍 · 윤원호 · 안민석 · 한명숙 · 정병국 · 이계진 의원 발의)	22
56. 농어업인부채경감에關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3
57.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58. 導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59. 船舶職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60.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1.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63.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64.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65.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강길부 · 박영선 · 정봉주 · 장향숙 · 장복심 · 임종석 · 신상진 · 김형주 · 우원식 · 이상경 · 단병호 의원 발의)	26
66.	騒音 · 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강길부 · 박영선 · 정봉주 · 제종길 · 장향숙 · 장복심 · 임종석 · 신상진 · 김형주 · 우원식 · 이상경 · 단병호 의원 발의)	26
67.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의設立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 · 이경재 · 김영주 · 김형주 · 단병호 · 우원식 · 공성진 · 이목희 · 장복심 · 조정식 · 김교홍 · 김덕규 · 김선미 · 김우남 · 김종률 · 김태홍 · 노현송 · 서혜석 · 엄호성 · 유승희 · 이상경 의원 발의)	26
68.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 · 김재경 · 이계경 · 임태희 · 이해봉 · 박세환 · 신상진 · 김재원 · 엄호성 · 안상수 · 정성호 · 최규식 · 박재완 · 고조홍 · 안민석 · 이은영 · 나경원 · 이경재 · 박승환 의원 발의)	26
69.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70.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28
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 · 김부겸 · 조경태 · 안상수 · 노현송 · 엄호성 · 강혜숙 · 우원식 · 김영덕 · 배일도 · 홍미영 · 신상진 · 이목희 · 임종인 · 김태홍 의원 발의)	28
72.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 · 신학용 · 김동철 · 김우남 · 오영식 · 김재윤 · 한광원 · 이영호 · 윤원호 · 김현미 · 백원우 · 제종길 의원 발의)	28
73.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75.	技能獎勵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7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9
77.	職業安定法中改正法律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배일도 · 서병수 · 엄호성 · 김덕규 · 안상수 · 김원웅 · 정성호 · 박재완 · 이재오 · 서재관 · 오제세 의원 발의)	30
78.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79.	技能大學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1
81.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이호웅 · 정장선 · 이강래 · 박상돈 · 서재관 · 노영민 · 장경수 · 김동철 · 장향숙 의원 발의)	31
8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 · 진수희 · 김양수 · 김명주 · 김영덕 · 권경석 · 김정권 · 안홍준 · 허태열 · 김정부 · 최구식 의원 발의)	31
83.	道路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2
8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2
86.	女性發展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16시24분 개의)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원기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지금 일부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의사 진행이 원활치 못한 상태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가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의 어떤 결의에 대한 이견도 아니고 상임위 내의 어떤 소위원회에서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산적한 안전 자체의 본회의 진행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의장으로서 믿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차선의 선택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헌법이 규정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본인은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대표들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법의 산실인 국회가 법치주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주의·주장이라도 법에 호소하고 법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물리력이나 폭력에 의존하고자 할 때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법치주의 정신의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면 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만든 어떤 법안이 다수 국민들의 이익과 국가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법안을 주도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을 반대했던 정파가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당연히 그 법을 고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의 움직임 수 없는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선진 국회에서도 물리력이나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정사 57년의 우리 국회도 그런 선진적인 국회로 탈바꿈할 때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에 근거해야 하고 법을 따라야 합니다. 본인은 의장으로서 그 원칙

을 단호하게 적용할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 안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문수 의원 외 94인으로부터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및 국군포로 한만택 복송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갑배) 선출안(의장 제의)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영조) 선출안(의장 제의)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신광수) 선출안(의장 제의)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경남) 선출안(의장 제의)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범) 선출안(의장 제의)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하광룡) 선출안(의장 제의)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준선) 선출안(의장 제의)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택) 선출안(의장 제의)
9.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황성재) 추천안(의장 제의)
10.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오웅석) 추천안(의장 제의)
1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손범규) 추천안(의장 제의)

(16시3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갑배)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영조)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신광수)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경남) 선출안, 의사일정 제5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범) 선출안, 의사일정 제6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하광룡) 선출안, 의사일정 제7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준선) 선출안, 의사일정 제8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

원(김영택) 선출안, 의사일정 제9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황성재) 추천안, 의사일정 제10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오용석) 추천안, 의사일정 제11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손범규) 추천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8건은 지난 제253회 국회(임시회)에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서 15인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임위원 2인 등 8인의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은 지난 제253회 국회(임시회)에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9인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을 추천하는 것으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각각 제안한 것입니다.

이들 11인에 대한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오늘 국회공보에 각각 게재하였으며, 단말기 회의 자료의 기타 배부 자료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11건의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건의 투표를 1장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중률 의원, 김현미 의원, 우제창 의원, 윤호중 의원, 정성호 의원, 강성중 의원, 서갑원 의원, 손봉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여덟 분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및 세 분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 및 추천 여부를 1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각각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따라 명패와 투표용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6시36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4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58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58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갑배)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매 중 가 154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갑배)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영조)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25표, 부 3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영조)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신광수)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55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신광수)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경남)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55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경남)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범)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55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범)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하광룡)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26표, 부 29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하광룡)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준선)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17표, 부 3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준선)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택)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51표, 부 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택)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황성재)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49표, 부 7표, 기권 1

표, 무효 1표로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황성재)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오용석)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48표, 부 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오용석)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손범규)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8표 중 가 137표, 부 20표, 무효 1표로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손범규)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7시24분)

○의장 김원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의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12항~제15항, 제17항~제21항, 제23항~제55항, 제58항~제68항, 제70항~제86항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지만 이의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최용규·노회찬 의원 외 167인 발의)

(17시2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2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최용규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출신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1949년 반민특위가 친일파에 의해 강제 해산된 이후 지난 57년 동안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진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를 했고 범명을 법안의 내용에 맞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조문을 재배치하는 등 충분히 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정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 不動産登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5.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6. 犯罪被害者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2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3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

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선병렬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선병렬 의원입니다.

먼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김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번 국적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와 국적 상실자에 대해서는 35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지난번 국적법의 개정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자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자에게 국가가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과 걱정은 해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심상정 의원, 송영길 의원, 박재완 의원이 각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하는 법률안 2건이 박세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이를 하나의 단일안으로 성안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뇌물죄 등의 가중처벌의 기준 금액이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처벌대상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가중처벌의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요건 중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요건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피해자 사망 당시 그 유족이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아니하는 유족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조금 지급 기간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주관적 지급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규정을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여 가구조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현행 민법은 당시 신설된 제1019조제3항의 규정 내용인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 즉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적용을 1998년 5월 27일부터 현행법 시행일인 2002년 1월 14일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제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에 따라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으나, 그 이후 상속채무 추가 사실을 안 자에게도 일정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별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부족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不動産登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犯罪被害者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4인 중 찬성 154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5인 중 찬성 148인, 기권 7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4인 중 찬성 151인, 기권 3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9. 行政規制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0.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2. 報勳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3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8항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전병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께서 상정하신 5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무위원회의 심사 결과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우리 위

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行政規制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報勳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4인 중 찬성 150인, 기권 4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4. 靑少年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신학용·박상돈·유승민·이재오·이시중·심재덕·배일도·서재관·이상경·엄호성·심재철·이해봉·안병엽·김현미·노현송·안상수·고조홍·손봉숙·김원웅·오제세 의원 발의)

25.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4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3항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근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이근식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이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통합하여 제안한 청소년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과 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무위에서 심사한 심사 내용과 제안설명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부록으로 보존함)

.....
(참조)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靑少年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7.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유기준·나경원·안택수·엄호성·김정권·김재원·김영선·박재완·안상수·이해봉 의원 발의)
(17시51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6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문학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문학진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문학진 의원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사정상 제가 대신합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매도인의 일방적인 지연손해금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표시 및 고지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둘째,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 및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율의 최고한도를 각각 연 100분의 40으로 하여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소비자와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와 관련한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반드시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있는 표시·광고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요정보의 발굴·평가 등과 관련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요정보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요정보제공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셋째, 사업자 등이 사전에 실증한 사실에 대하여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여 표시·광고의 진실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자 등의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 시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이 법과 민간의 표시·광고 관련 자율심의 기구를 연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시정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심의 기구에 대해 필요한 경우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조사·검사 및 시정명령권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인으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30.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31. 公社債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7시5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9항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박영선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박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와의 MOU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부, 예금보험공사의 제재 조치를 세분화해서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하여도 실명화 및 무권화를 일부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금감위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증권회사 임원결격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임원결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公社債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으로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8시01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2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임종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임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과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기본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을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 간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 대표의 임명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 남북 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남북 간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통일부장관은 남북 관계 발전에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위해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 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 특별사절의 임명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고, 특히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남부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4.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8시0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3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규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울 강북을 출신 최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경사 계급까지 할 수 있는 근속 승진을 경위 계급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승진 소요기간은 순경 계급에서 경장 계급은 6년 이상, 경장 계급에서 경사 계급은 7년 이상, 경사 계급에서 경위 계급은 8년 이상 해당 계급 근속자로 하며,

셋째 정원의제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넷째 시행은 2006년 3월 1일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족사에 빛나는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드높이고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기념일인 한글날을 국경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3·1절, 광복절, 개천절만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을 감안하여 국경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8.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0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5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일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입니다.

이 4개 법안도 본래 한나라당 의원께서 제안설명·심사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법안을 의결하는 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하셔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법률안은 첫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번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번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것을 참조하여 주시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43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4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41.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原子力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3.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44. 기상관측표준화법안(정부 제출)

(18시1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9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기상관측표준화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변재일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김희정 의원의 대표발의안, 염동연 의원의 대표발의안 3건을 통합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안,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안, 서혜석 의원 대표발의안 그리고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상관측표준화법안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의결한 만큼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상관측표준화법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혜석 의원 대표발의)(서혜석·배일도·

엄호성·이윤성·최규성·이영호·이근식·김태년·황우여·김우남·우제창·조경태·박재완·조일현·이은영·신기남·임종석·한병도·정청래·우제항·심재철·김종률·주승용·이광철 의원 발의)

46. 電氣通信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18시2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5항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서혜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서혜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서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영선 의원과 심재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를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電氣通信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48. 電子署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18시2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7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홍창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홍창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홍창선 의원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대안의 요지는 홍창선 의원 대표발의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안, 그리고 김양수 의원 대표발의안을 심의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싱 등의 수법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안, 김양수 의원 대표발의안, 정부 제출안을 심사한 결과 이 3건의 개정안을 수정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電子署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5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1. 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이종걸·홍창선·유승희·권선택·강성종·류근찬·심재엽·안병엽·우제항·진영 의원 발의)

5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8시32분)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유승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는 유승희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 접근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에 정보 소외 계층 당사자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내에 정보 격차 해소 업무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사업내용에 건전 정보문화 확산 및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예방·해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 등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파자원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파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전파법의 개정에 따라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손실 보상의 재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게 되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파법 개정안의 수정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보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 감

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정보화촉진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정
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

곽성문·정의화·이혜훈·김영선·김정부·
김정훈·정문헌·강재섭 의원 발의)

54. 情報通信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
원 대표발의)(이명규·김재원·박재완·심재
철·권경석·곽성문·안상수·김성조·정갑
윤·이상득·임인배·배일도·이상배·고조
홍·엄호성·이인기 의원 발의)

(18시40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3항 우체국예금·보
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류근찬 의원 나오서
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代理 柳根粲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류근찬입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
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준 의원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
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과정에서 일
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은 단말
기 회의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서 원안대로 의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역
시 단말기 회의 자료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습
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
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보고서

情報通信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우
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
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
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5. 文化예술교육지원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
의)(민병두·이광철·김태홍·정청래·이은
영·우상호·이미경·김재홍·윤원호·안민
석·한명숙·정병국·이계진 의원 발의)

(18시4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5항 문화예술교육지
원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민병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안은 국민 모두에게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일부의원이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원안의 본질을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 등 3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심재철 의원 등 39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인, 반대 148인, 기권 2인으로서 심재철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은 문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7.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4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6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우남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김우남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우남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는 본 의원 김낙성 의원 그리고 유선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원금을 10% 이상 상환하는 경우에는 3%의 금리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5%의 금리로 3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며,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농지은행사업만 추가하도록 수정하였고, 농업기반공사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농
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0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으로서 농
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
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導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
산위원장 제출)

59. 船舶職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
양수산위원장 제출)

60.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5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8항 도선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해양오염방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3
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영호 존경하는 의
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같은 제명
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도선사들의 정년 연장을 폐지하되 기
존의 도선사들에 대하여는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
였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도선사 자격에 관
한 취소·정지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
으며, 도선구간 중 일정 범위를 승·하선 구역으
로 정하여 도선사가 그 범위 안에서 승·하선하
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
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이 대안은 현행 선박직원법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수산업계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된 것으로, 어선의 경우 상선과
동일하게 국제 협약에 따라 해기사의 자격을 인
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로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국적어선에
승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등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선박에 계속하
여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제 개선 차원에서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 해사 기구에서 채택한 선박으
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이 2005년 5
월 19일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는
것으로서, 선박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와 관련하여 국내 연안지역에서 어로 활동을 하
는 소형 선박까지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5년의 범위 안에서 유예 기간을
둔 후 적용하기로 하였고, 선박용 연료유의 황함
유량 제한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導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船舶職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1.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장 제출)

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3.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4.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시5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61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목희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이목희 참으로 존경하는 150분의 의원님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목희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일반 수도사업자는 옥내 급수관 등 급수설비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각 시·군·구별로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불법연료 및 첨가제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조)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수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대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환
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5.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김영주 · 강길부 · 박영선 · 정봉주 · 장향숙 ·
장복심 · 임종석 · 신상진 · 김형주 · 우원식 ·
이상경 · 단병호 의원 발의)

66. 騒音 · 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
원 대표발의)(김영주 · 강길부 · 박영선 · 정봉
주 · 제종길 · 장향숙 · 장복심 · 임종석 · 신상
진 · 김형주 · 우원식 · 이상경 · 단병호 의원 발
의)

67.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의設立및運營등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제종길 · 이경재 · 김영주 · 김형주 · 단병호 ·
우원식 · 공성진 · 이목희 · 장복심 · 조정식 ·
김교홍 · 김덕규 · 김선미 · 김우남 · 김종률 ·
김태홍 · 노현송 · 서해석 · 엄호성 · 유승희 ·
이상경 의원 발의)

68.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 · 김
재경 · 이계경 · 임태희 · 이해봉 · 박세환 · 신
상진 · 김재원 · 엄호성 · 안상수 · 정성호 · 최
규식 · 박재완 · 고조홍 · 안민석 · 이은영 · 나
경원 · 이경재 · 박승환 의원 발의)

69.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0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65항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소음 · 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67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
립및운영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영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상수원수
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만 수
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 수계에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폐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특정지역 중 특히 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감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사가 수도권 매립지 내에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하에 업무의 위탁이나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되 현행의 분담 이행 방식은 폐지하고,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의 사전 통지 의무를 삭제하고,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 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騒音·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首都圏埋立地管理公社의設立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한강수계상수원수질 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 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김부겸·조경태·안상수·노현송·엄호성·강혜숙·우원식·김영덕·배일도·홍미영·신상진·이목희·임종인·김태홍 의원 발의)

72.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신학용·김동철·김우남·오영식·김재윤·한광원·이영호·윤원호·김현미·백원우·제종길 의원 발의)

73.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5. 技能장려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1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70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제종길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도급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책임 부담 여부와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등 2004년 8월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9조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 관해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고용 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 평등 증진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도 역시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으로서, 제안 이유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려

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에 따라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技能獎勵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7. 職業安定法中改正法律案(배일도 의원 대 표발의)(배일도·서병수·엄호성·김덕규· 안상수·김원웅·정성호·박재완·이재오· 서재관·오제세 의원 발의)

78.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9. 技能大學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2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76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직업안정 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한국산업인력 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기능대 학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정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조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 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김애실 의원, 박찬숙 의원, 정부가 각 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 정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 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배일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중 개정법률안은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 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비 영리법인인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을 인정하고,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을 기능사 양성훈련에서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체 제로 재편하고 책임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職業安定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技能大學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직 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한국산업인력 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81.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조경대 의원 대표발의)

(조경대·이호웅·정장선·이강래·박상돈·서재관·노영민·장경수·김동철·장향숙 의원 발의)

8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김학송·진수희·김양수·김명주·김영덕·권경석·김정권·안홍준·허태열·김정부·최구식 의원 발의)

83. 道路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30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80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8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윤호중 건설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이 개별적이고 소규모 단위로 시행되고 있어서 도시기반시설 등의 계획적인 설치와 생활환경의 개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원래 이 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모두 3개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을 제안해 주신 노용래 의원님과 ‘서울 강북지역 균

형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한나라당의 김학송 의원님 등 모두 이 법이 저희 위원회에서 단일안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고, 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업무 위탁기관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사를 활용하여 보상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차량의 경우에 임차한 차량이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차량의 임차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과적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대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道路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4인, 반대 5인, 기권 2인

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8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86. 女性發展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3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84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5항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이경숙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이경숙 의원입니다.

세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애자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해서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여성가족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성
 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여성발전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에 따라서 의사
 일정 제87항~제89항은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항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길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송영길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안영근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영식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윤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제창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우제창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재건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승희	유시민	유원호	이강래	유승희	유시민	유원호	이강래	이강래
우제창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광재	이근식	유필우	윤원호	이광재	이근식	이근식
유승희	유시민	유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목희	이미경	이경숙	이광재	이목희	이미경	이미경
유필우	윤원호	이광재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상열	이석현	이기우	이낙연	이상열	이석현	이석현
이경숙	이광재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상경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용희
이기우	이낙연	이상열	이석현	이시종	이은영	이인영	임종석	이시종	이은영	이인영	임종석	이화영
이상경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이원영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경수
이시종	이은영	이인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경수
이원영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성호	정성호	장향숙	전병헌	정성호	정성호	정성호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정봉주	정성호	정진석	정성호	정봉주	정성호	정진석	정성호	정성호
장향숙	전병헌	정성호	정성호	정장선	정진석	정성호	정성호	정장선	정진석	정성호	정성호	정성호
정봉주	정성호	정진석	정성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래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래	조성래
정장선	정진석	정성호	정성호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승용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승용	주승용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래	최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규성	최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규성	최규성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승용	최성	최순영	최재천	최재천	최성	최순영	최재천	최재천	최재천
채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규성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최철국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최철국	최철국
최성	최순영	최재천	최재천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미영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미영	홍미영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최철국	홍창선				홍창선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미영									
홍창선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不動産登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4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세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7인)
 김성곤 김종률 김종인 노회찬
 심상정 이영순 현애자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세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民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세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犯罪被害者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 의원(3인)

강 창 일 김 성 곤 심 상 정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 의원(1인)

김 중 인

○行政規制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용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용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중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 의원(1인)
 심 상 정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 의원(4인)
 김 명 자 김 중 인 우 상 호 조 경 태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부 결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호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결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호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 의원(1인)

김 중 인

(김희선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 의원 154인, 찬성 의원 153인임)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기 흥 유 선 호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 의원(2인)

김 성 곤 유 승 희

○青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용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룰 김 중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報勳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용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룰 김 중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재형	홍창선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구논희				구논희	노회찬	이영순	

○青少年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青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기권 의원(2인)
 김덕규 홍재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1인)

김종률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재성
 최성 최순영 최재천 최철국
 현애자 홍미영 홍창선

반대 의원(1인)

김종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시종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시종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규식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김종률

○公社債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영호	이용희
이시종	이영순	이은영	이화영
		임종인	장경수
		임채정	정덕구
		전병헌	정동채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영호	이용희
이시종	이영순	이은영	이화영
		임종인	장경수
		임채정	정덕구
		전병헌	정동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 의원(1인)
 안 영 근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 의원(2인)
 김 중 인 노 회 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1인)
 강봉균
기권 의원(1인)
 이미경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최성

○責任運營機關의設置 · 운영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4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기우 이상경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영호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인영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임정헌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성호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철국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9인)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1인)

김종률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재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1인)
 강성종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2인)
 이상경 이영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原子力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상관측표준화법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	-------	-------	-------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재덕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안영근	양승조	염동연	오영식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이인영	이인제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양형일

(이상열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153인, 기권 의원 1인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電氣通信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이영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2인)

강성종 안민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電子署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박원우 변재일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서재관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안민석 안병엽 우상호 유시민 이경숙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손봉숙 양형일 염동연 우원식 이영순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기남 심상정 안영근 오영식 유시민 이영순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안병엽 오영식 우원식 유시민 이영순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염동연 오영식 우원식 유시민 이영순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원식 유시민 이영순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시민 이영순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시민 이영순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이강래 이기우
 유필우 윤원호 이광재 이근식 이상경
 이경숙 이낙연 이목희 이시종 이은영
 이기우 이상민 이석현 이원영 임종인
 이상경 이영호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이영순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정성호 정창래 조성태 조배숙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의용 조성태 조배숙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조성태 조배숙
 정장선 정창래 제종길 조경태 조일현 조일현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규성 최규성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용규 최재천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송영길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양승조
 안민석 안병엽 우상호 유시민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유시민
 우상호 우원식 유시민 이경숙
 원혜영 유기홍 유시민 이영순
 유시민 유인태 이강래 이기우
 윤원호 윤호중 이광재 이상경
 이광재 이목희 이시종 이은영
 이낙연 이석현 이원영 임종인
 이상민 이석현 이원영 임종인
 이영호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정성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정성호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의용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조성태
 정창래 제종길 조경태 조일현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일현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규성
 천정배 최규성 최용규 최재천
 최순영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김덕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기권 의원(1인)

강성종

○情報通信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원혜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유원호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인영	이화영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재성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기권 의원(2인)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심상정	최용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인)

이은영

반대 의원(14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정청래	제종길	조정태	조배숙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홍재형	홍창선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조경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1인)
 선병렬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기권 의원(1인)
 김영춘

○**導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船舶職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상호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원호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목희 이근식 이기우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재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재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장 기 갑 장 기 정 장 길 부 장 봉 균
 장 성 종 장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용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용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장 기 갑 장 기 정 장 길 부 장 봉 균
 장 성 종 장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용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용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응래
문병호	문석호	단병호	류근찬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현애자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우제창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창 선

양 형 일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의設立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騒音·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창 선

기권 의원(1인)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계 룬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창 선

기권 의원(2인)

송 영 길 정 동 채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선 병 렬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신 기 남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안 병 엽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염 동 연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우 원 식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유 기 흥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인 태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호 중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이 광 철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목 희	이 미 경	이 기 우	이 낙 연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영 순	이 영 호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이 인 영
장 경 수	임 종 달	장 향 숙	임 채 정
정 덕 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세 균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제 종 길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조 성 태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일 현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 의원(1인)

강 성 종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반대 의원(1인)

정 성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홍창선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2인)

문병호 조일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홍창선							

기권 의원(2인)

김덕규 최용규

○技能獎勵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정의용	정장선	제종길	조경태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기권 의원(2인)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김성곤	박명광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職業安定法中改正法律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영호
 이석현 이시종 이원영 이인영
 이용희 이원영 임종석 임채정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전병헌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정성호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청래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성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영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기권 의원(2인)

김원웅 홍재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해석 신기남
 손봉숙 송영길 안민석 안영근
 심재덕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技能大學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창 선

반대 의원(9인)

강 기 갑 권 영 길 노 회 찬 단 병 호
 심 상 정 이 영 순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 의원(2인)

김 덕 규 김 종 룰

(강기갑·권영길·심상정·천영세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40인, 반대 의원 9인임)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창 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정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정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김성곤			

○道路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김종률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1인)
 김명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女性發展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출석 의원(16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둔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업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정 일 이 화 영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화 갑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출장 의원(4인)

엄 호 성 이 계 안 이 호 응 한 명 숙

○청가 의원(12인)

김 홍 일 신 상 진 신 학 용 안 홍 준
 우 제 항 이 규 택 이 종 결 이 해 찬
 장 북 심 정 몽 준 주 성 영 최 병 국

○출석 국무위원

부 총 리 겸 관 한 덕 수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오 명
 부 총 리 겸 관 오 명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오 명
 법 무 부 장 관 오 명
 노 동 부 장 관 오 명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오 명

○출석 정부위원

통 일 부 차 관 이 봉 조
 농 림 부 차 관 이 명 수
 정보통신부차관 이 노 준 형
 환 경 부 차 관 박 선 숙
 해양수산부차관 강 무 현
 국 가 보 훈 처 장 박 유 철
 건 설 교 통 부 장 권 도 업
 정 책 홍 보 관 리 실 장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장 강 철 규

○국회사무처

입 법 차 장 상 원 종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	권경석	한나라당	2005. 12. 1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여성가족	조배숙	박영선	열린우리당	2005. 12. 8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갑 의원 대표발의)

(2005. 12. 1 김용갑·곽성문·김기현·김교홍·김영덕·김영숙·김태홍·김희정·박순자·서갑원·안경률·이계진·임인배·정문현 의원 발의)

12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2005. 12. 1 김문수·고경화·고조홍·고진화·고홍길·공성진·권영세·김애실·김영선·김영숙·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화·박계동·박성범·박순자·박재완·박진·박찬숙·배일도·송영선·신상진·심재철·안상수·유정복·윤건영·이경재·이계경·이군현·이규택·이성구·이윤성·이재오·이재창·이종구·이주호·이혜훈·임태희·임해규·전여옥·전재희·정두언·정병국·정진섭·정화원·진수희·진영·최병국·홍준표·황진하 의원 발의)

12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國家情報院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2005. 12. 1 임종인·강기갑·강창일·권영길·노회찬·단병호·박찬석·심상정·엄호성·유선호·이광철·이영순·이원영·장영달·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12월 2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5. 12. 1 진수희·안상수·이인기·이군현·나경원·권영세·임태희·이재웅·최순영·김영숙·김희정·안명옥·이진구·이성권·정병국·유정복·박승환·박형준·최구식·박찬숙·김석준·임해규·고홍길·한선교·김충환·서상기·김기현·심재엽·이혜훈·권철현·주호영·박세환·유승민 의원 발의)

12월 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 박찬숙·안명옥·진수희·김충환·안민석·노현송·홍미영·이재오·박형준·정의화·고조홍·이성권·심재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 박찬숙·박형준·김재원·황우여·신학용·심재덕·엄호성·안명옥·최구식·진수희·노현송·홍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補助金の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 박찬숙·심재덕·심재철·안병엽·엄호성·이인기·권영세·정봉주·안명옥·안민석·이재오 의원 발의)

12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 전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 선병렬·양승조·한병도·우윤근·정성호·이종걸·홍창선·김낙순·강성종·최규성·권선택·이원영·최재천·조성태·변재일·서혜석·정봉주·이석현·강기정·김춘진·이광철·이목희·민병두·이경숙·이은영·강기갑 의원 발의)

12월 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방개혁기본법안

(2005. 12. 2 정부 제출)

12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 김종률·강창일·김교홍·우제창·서혜석·노웅래·김진표·김명자·최구식·신학용·서재관·안병엽 의원 발의)

12월 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

(2005. 12. 2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公有水面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

(2005. 12. 5 김형오·김재경·손봉숙·심재철·이영호·김광원·고조홍·박승환·엄호성·안병엽·박상돈·조경태·정성호 의원 발의)

12월 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

(2005. 12. 5 유필우 · 이원영 · 안상수 · 강창일 · 엄호성 · 이인기 · 서혜석 · 노현송 · 심재철 · 박재완 · 심재덕 · 박상돈 · 이해봉 · 이해훈 · 정성호 의원 발의)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

(2005. 12. 5 김형오 · 심재철 · 이인기 · 정병국 · 유기준 · 엄호성 · 장윤석 · 김광원 · 박재완 · 안상수 · 황우여 · 안병엽 · 권영세 의원 발의)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김성곤 · 유선호 · 이영호 · 김명자 · 박성범 · 이광철 · 박세환 · 임종석 · 이정일 · 정의화 · 이화영 · 주승용 · 조배숙 · 신중식 · 최성 의원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2005. 12. 6 정부 제출)

북한의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주성영 · 권오을 · 엄호성 · 김재원 · 유승민 · 신학용 · 공성진 · 김광원 · 이한구 · 임인배 · 김태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2005. 12. 6 나경원 · 이진구 · 권영세 · 이명규 · 이계경 · 김애실 · 김정훈 · 정두언 · 최구식 · 이강두 · 김정권 · 유승민 의원 발의)

12월 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천영세 의원 발의)

(2005. 12. 5 천영세 의원 외 9인 발의)

12월 7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김충환 · 이재오 · 최구식 · 엄호성 · 이재웅 · 박승환 · 서병수 · 심재철 · 이인기 · 맹형규 · 박순자 · 박찬숙 · 박성범 · 박재완 · 이강두 · 신상진 · 권영세 · 김무성 · 나경원 · 이해봉 · 이진구 · 허태열 · 안홍준 · 정형근 · 최경환 · 고경화 · 고조홍 · 이해훈 · 황우여 · 임해규 · 이명규 · 정병국 · 공성진 · 정두언 · 진영 · 진수희 · 김석준 · 임인배 · 김학송 · 박종근 · 윤두환 · 김양수 · 김영덕 · 이상

득 · 김영숙 · 고흥길 · 황진하 · 이주호 · 유기준 · 박진 · 김명주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허천 · 김재원 · 박세환 · 정문헌 · 이해봉 · 엄호성 · 황우여 · 임해규 · 박계동 · 박형준 의원 발의)

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윤호중 · 안민석 · 최규식 · 엄호성 · 김태홍 · 노영민 · 김동철 · 김종률 · 안병엽 · 김태년 · 이근식 · 정성호 · 신상진 · 주승용 · 전여옥 · 최인기 · 배일도 · 서재관 · 우윤근 · 박계동 · 장경수 · 안명옥 · 손봉숙 · 권오을 · 임인배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김충환 · 김재원 · 이해훈 · 유정복 · 유승민 · 엄호성 · 이인기 · 이재오 · 맹형규 · 최구식 · 이재웅 · 박승환 · 서병수 · 심재철 · 박순자 · 박찬숙 · 박성범 · 박재완 · 이강두 · 신상진 · 권영세 · 김무성 · 나경원 · 이해봉 · 이명규 · 정병국 · 공성진 · 정두언 · 진영 · 진수희 · 김영숙 · 고흥길 · 이주호 · 유기준 · 박진 · 이진구 · 허태열 · 안홍준 · 정형근 · 고조홍 · 김석준 · 임인배 · 김학송 · 박종근 · 윤두환 · 김양수 · 최경환 · 김영덕 · 이상득 · 고경화 · 황우여 · 임해규 · 김명주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이경재 · 이윤성 · 황우여 · 배일도 · 정두언 · 신상진 · 공성진 · 권철현 · 고조홍 · 정의화 · 이종구 · 박성범 · 이강두 · 김용갑 · 김영선 · 김덕용 · 이재창 · 안명옥 · 유정복 · 한선교 · 안상수 의원 발의)

12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윤호중 · 안민석 · 최규식 · 엄호성 · 김태홍 · 노영민 · 김동철 · 김종률 · 안병엽 · 김성곤 · 김태년 · 이근식 · 정성호 · 신상진 · 주승용 · 전여옥 · 최인기 · 배일도 · 서재관 · 심재덕 · 우윤근 · 박계동 · 장경수 · 안명옥 · 손봉숙 · 권오을 · 임인배 의원 발의)

12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유기홍·이인영·조배숙·지병문·최재성·백원우·구논회·정봉주·강혜숙·이경숙·유시민·이광철·강기정·김형주·김태년·김재윤·이주호·이원영·임해규·노현송·강창일·최규성·김태홍 의원 발의)

12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國家債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5. 12. 7 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최인기·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 의원 발의)

12월 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5. 12. 7 박상돈·최인기·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 의원 발의)

12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軍事施設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5. 12. 7 박상돈·강혜숙·강성중·권경석·김낙순·김동철·김부겸·김태홍·김학송·신학용·안병엽·양승조·엄호성·윤호중·이근식·이시중·이호용·정병국·정봉주·정성호·조정태·조배숙·주승용·한광원 의원 발의)

12월 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2. 7 단병호·권영길·최순영·강기갑·정두언·우원식·제종길·신상진·공성진·현애자·이영순·심상정·노회찬·천영세·조정식 의원 발의)

12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005. 12. 7 김원웅·김태홍·강창일·신중식·이근식·장복심·이상민·정장선·이원영·김태년·노현송·원혜영·이종걸·이영순·김재홍·유선호·임종인·정성호·양형일·강혜숙·엄호성·정봉주·김성곤·선병

렬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5. 12. 7 안상수·이인기·신상진·엄호성·심재덕·변재일·김성조·주성영·권경석·공성진·고조홍·김희정·진영·김석준·김용갑·이규택·황우여·진수희·김영숙·이주호 의원 발의)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5. 12. 7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2005. 12. 7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行政規制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05. 12. 7 정무위원장 제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導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船舶職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05. 12. 7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5. 12. 7 정화원·김정권·남경필·이인기·박세환·안택수·한선교·임인배·박순자·김기현·권오을·김무성·이재창·이상배·이강두·이기우·김덕규·임태희·안명옥·이해봉·김희정·서재관·박상돈·고진화 의원 발의)

12월 8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臟器等移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5. 12. 7 정화원·남경필·이인기·박세환·안택수·한선교·임인배·박순자·김기현·김무성·권오을·이재창·이강두·임태

회 · 이기우 · 김덕규 · 김희정 · 안병엽 · 서재관 · 박상돈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國際船舶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2. 7 정부 제출)

12월 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公社債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05. 12. 7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정동영 장관의 사과 및 정부의 책임회피 중단 촉구 결의안

(2005. 12. 7 공성진 · 최구식 · 최연희 · 최병국 · 전여옥 · 박계동 · 홍준표 · 김문수 · 이해훈 · 정두언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電子署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電氣通信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05. 12. 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不動產登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05. 12. 7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2005. 12. 7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05. 12. 7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責任運營機關의 設置 · 운영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05. 12. 7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갑배) 선출안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영조) 선출안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신광수) 선출안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경남) 선출안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범) 선출안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하광룡) 선출안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준선) 선출안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택) 선출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황성재) 추천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오용석) 추천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손범규) 추천안

(이상 11건 2005. 12. 7 의장 제의)

○의안 심사

犯罪被害者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6 정부 제출)

천일만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2005. 2. 24 최용규 · 노회찬 의원 외 167인 발의)

民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6. 28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不動產登記法中改正法律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4. 11. 9 심상정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不動產登記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5. 9. 20 박재완 · 이해훈 · 엄호성 · 배일도 · 박세환 · 이인기 · 황우여 · 김양수 · 최경환 · 김학송 의원 발의)

不動產登記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발의)

(2005. 9. 28 송영길 의원 외 143인 발의)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4. 12. 30 박세환 · 이해봉 · 엄호성 · 오시덕 · 서병수 · 황우여 · 박재완 · 김재원 · 안병엽 · 이근식 · 이해훈 · 허천 · 홍창선 · 정성호 의원 발의)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5. 1. 31 박세환 · 유기준 · 이해봉 · 진수희 · 김재원 · 이상득 · 송영길 · 안상수 · 엄호성 · 이경재 · 김충환 · 박순자 · 김애실 의원 발의)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홍준표 · 박계동 · 이윤성 · 박세환 · 박종근 · 신상진 · 이군현 · 김문수 · 이재오 · 이성구 · 최구식 · 박승환 · 유승민 · 박재완 · 서병수 · 심재철 · 김양수 · 김충환 · 이명규 · 김정훈 · 이강두 · 김희정 · 전여옥 · 송영선 · 김재경 · 안경률 · 정화원 · 김태환 · 정중복 · 정갑윤 · 박형준 · 김정권 · 고조홍 · 김무성 ·곽성문 · 심재엽 · 안홍준 · 정병국 · 김영덕 · 이상득 · 홍문표 의원 발의)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발의)

(2005. 9. 12 김성곤 의원 외 144인 발의)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5. 9. 21 이명규 · 유기준 · 나경원 · 안택수 · 엄호성 · 김정권 · 김재원 · 김영선 · 박재완 · 안상수 · 이해봉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靑少年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

(2005. 9. 7 이근식 · 신학용 · 박상돈 · 유승민 · 이재오 · 이시종 · 심재덕 · 배일도 · 서재관 · 이상경 · 엄호성 · 심재철 · 이해봉 · 안병엽 · 김현미 · 노현송 · 안상수 · 고조홍 · 손봉숙 · 김원웅 · 오제세 의원 발의)

報勳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12 정부 제출)

靑少年의性保護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7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복권및복권기금법중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4. 11. 22 양승조 · 김원웅 · 이철우 · 이원영 · 엄호성 · 이시종 · 오제세 · 신기남 · 고진화 · 정성호 · 이은영 · 우윤근 · 선병렬 · 문석호 · 김한길 의원 발의)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구 의원 대표발의)

(2005. 9. 21 이진구 · 이상배 · 김재원 · 엄호성 · 안상수 · 신상진 · 나경원 · 이인기 · 이해봉 · 이계진 · 한선교 · 진수희 · 김용갑 · 정희수 · 송영선 · 김학송 · 박계동 · 주호영 · 최연희 · 홍문표 · 안경률 · 박찬숙 · 박순자 · 서상기 · 심재엽 · 전여옥 · 이상득 · 장윤석 · 권오을 · 김기춘 · 이강두 · 최구식 · 권경석 · 최경환 · 김정권 · 김문수 · 이병석 · 김석준 · 최병국 · 박진 · 임인배 · 정두언 · 주성영 ·곽성문 · 정병국 · 고조홍 · 배일도 · 공성진 · 유정복 · 이재창 · 김무성 · 김명주 · 이윤성 · 김충환 · 이재오 · 이규택 · 황진하 · 신국환 의원 발의)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7 정부 제출)

行政規制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유기준 · 박세환 · 엄호성 · 김충환 · 양형일 · 최구식 · 이성권 · 권철현 · 서병수 · 박형준 · 박승환 · 이해훈 · 나경원 · 유정복 · 김양수 · 진영 의원 발의)

行政規制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8 정부 제출)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

(2005. 8. 16 이근식 · 김현미 · 심재덕 · 유승민 · 이재오 · 이해봉 · 고조홍 · 안병엽 · 심재철 · 안상수 · 이시종 · 손봉숙 · 배일도 · 김원웅 · 이상경 · 신학용 · 박상돈 · 오제세 · 노현송 · 엄호성 · 서재관 의원 발의)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7 정부 제출)

除隊軍人支援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005. 6. 8 정부 제출)

除隊軍人支援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

(2005. 8. 18 고진화 · 김희선 · 안상수 · 박세환 · 김성곤 · 고조홍 · 박계동 · 황진하 · 신상진 · 신국환 · 정성호 · 이윤성 · 엄호성 · 강창일 · 박명광 · 최재성 · 이진구 · 이광철 · 이해봉 · 배일도 · 황우여 · 노현송 · 이원영 · 이해훈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4 정부 제출)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문학진 · 강길부 · 김태홍 · 김형주 · 노현송 · 박명광 · 신학용 · 이근식 · 이상경 · 이인영 · 장영달 · 최규성 의원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05. 8. 2 윤건영 · 김석준 · 김애실 · 김재원 · 박세환 · 박찬숙 · 배일도 · 심재철 · 안명옥 · 안상수 · 엄호성 · 이계경 · 이해봉 · 정희수 · 황우여 의원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5. 9. 21 이명규 · 유기준 · 나경원 · 안택수 · 엄호성 · 김정권 · 김재원 · 김영선 · 박재완 · 안상수 의원 발의)

表示 · 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5. 8. 16 이성권 · 김석준 · 김재원 · 김명주 · 엄호성 · 김재경 · 박재완 · 안상수 · 권철현 · 박형준 · 김희정 · 원희룡 · 이계경 의원 발의)

報勳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12 정부 제출)

(이상 1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정무위원장 보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6. 20 박영선 · 김종률 · 이은영 · 송영길 · 민병두 · 정청래 · 우제창 · 김효석 · 이상민 · 노현송 · 전병헌 · 이종걸 · 김낙순 · 최성 · 천정배 의원 발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05. 9. 28 윤건영 · 박세환 · 김재원 · 엄호

성 · 안상수 · 박재완 · 유승민 · 정병국 · 이해봉 · 이명규 · 이윤성 · 고조홍 · 박찬숙 · 이해훈 의원 발의)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4. 12. 20 박영선 · 권선택 · 한명숙 · 김영춘 · 우제창 · 김현미 · 신학용 · 송영길 · 정덕구 · 정청래 · 민병두 의원 발의)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5. 4. 20 이혜훈 · 박재완 · 정두언 · 엄호성 · 심상정 · 유승민 · 최경환 · 조승수 · 김정은 · 권영길 · 임태희 의원 발의)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7. 12 박찬숙 · 박재완 · 김재원 · 최경환 · 엄호성 · 이근식 · 박세환 · 박상돈 · 심재철 · 고조홍 · 황우여 의원 발의)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5. 8. 22 이성권 · 김석준 · 권철현 · 박형준 · 김희정 · 원희룡 · 이계경 · 곽성문 · 김무성 · 김명주 의원 발의)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5. 8. 31 김효석 · 강창일 · 김석준 · 심재철 · 이근식 · 이상경 · 이성권 · 이원영 · 엄호성 · 최인기 의원 발의)

公社債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박계동 의원 대표발의)

(2005. 9. 16 박계동 · 강재섭 · 고조홍 · 고진화 · 권경석 · 권영길 · 권오을 · 김덕룡 · 김문수 · 김석준 · 김애실 · 김영덕 · 박명광 · 박성범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배일도 · 손봉숙 · 신상진 · 심재철 · 엄호성 · 원희룡 · 이계경 · 이계진 · 이근현 · 이방호 · 이상배 · 이성구 · 이재오 · 이재웅 · 이종구 · 이한구 · 임인배 · 전여옥 · 전재희 · 정두언 · 정의화 · 주성영 · 주호영 · 진영 · 최병국 · 홍준표 의원 발의)

公社債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4 정성호 · 김선미 · 최재천 · 박재완 · 박기춘 · 우원식 · 이원영 · 이미경 · 김태홍 · 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임채정 의원 대표발의)

(2004. 8. 3 임채정·강봉균·강창일·고진화·구논회·권선택·권영길·권오을·김교홍·김낙순·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성곤·김영숙·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운·김재홍·김종률·김태홍·김한길·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효석·노영민·노웅래·노현송·단병호·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박기춘·박영선·박재완·박찬석·배기선·배일도·백원우·복기왕·서갑원·서재관·선병렬·손봉숙·송영길·신계륜·신국환·신기남·신중식·신학용·심재덕·심재철·안민석·안병엽·안영근·안홍준·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원식·우제창·원혜영·원희룡·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유재건·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경·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상경·이석현·이시중·이영호·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종걸·이철우·이호웅·이화영·임종석·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전재희·정덕구·정두연·정병국·정봉주·정세균·정의용·정장선·정청래·제종길·조배숙·조성래·조정식·진수희·천영세·최규성·최규식·최성·최순영·최용규·최인기·최재성·최재천·한명숙·한병도·한화갑·홍미영 의원 발의)

남북관계기본법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2004. 11. 3 정문헌·박형준·권영세·이주호·권오을·유기준·박승환·김기현·진수희·정병국·원희룡·유정복·남경필·이재오·이성권·김양수·이계경·김명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3건 2005. 11. 23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국방위원장 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0. 21 정부 제출)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5. 18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2005. 6. 13 권오을·김명주·고조홍·정문헌·이성권·임인배·박세환·이해봉·황우여·엄호성·김희정·정병국·류근찬·임종석·이상배·김양수·곽성문·김태환·김재홍 의원 발의)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5. 6. 29 강창일·정성호·이광철·임종인·양형일·김우남·제종길·정봉주·김태홍·노현송·강기정·김태년·조경태·박기춘·최재성·심재덕·전병헌·한명숙 의원 발의)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3 최규식·이용희·노현송·우제항·양형일·심재덕·박기춘·원혜영·홍미영·조성래·유인태·정진석·유기준·서병수·이인기·고홍길·김정권·김기춘·우원식·윤호중·오영식·김태홍·염동연·강기정·지병문·민병두·우윤근·노웅래·이강래·이목희·임종석 의원 발의)

國慶日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004. 7. 15 신기남·구논회·권철현·김낙순·김덕규·김맹곤·김영주·김우남·김원웅·김재홍·김충환·김태홍·김한길·김현미·김형주·노웅래·노현송·노희찬·단병호·류근찬·문학진·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진·박찬석·박찬숙·복기왕·손봉숙·송영길·신국환·심재철·안명옥·엄호성·오영식·우상호·우윤근·우제항·유기준·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재건·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영순·이종걸·임종석·임종인·임채정·장복심·장향숙·전병헌·정덕구·정병국·정성호·정청래·조배숙·천영세·천정배·최용규·최재천·최인기·홍미영 의원 발의)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8 이규택 · 이재오 · 엄호성 · 이경재 · 이인기 · 정병국 · 박찬숙 · 류근찬 · 박순자 · 고진화 · 이균현 · 허천 · 정화원 · 진수희 의원 발의)

責任運營機關의設置 · 운영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9 우제항 · 홍미영 · 최재성 · 박기춘 · 염동연 · 심재덕 · 우제창 · 권오을 · 양형일 · 정장선 · 원혜영 · 정봉주 ·곽성문 의원 발의)

責任運營機關의 設置 · 운영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1 정부 제출)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변재일 · 이종걸 · 홍창선 · 유승희 · 권선택 · 강성종 · 류근찬 · 심재엽 · 안병엽 · 우제항 · 진영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7 정부 제출)

情報通信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1 이명규 · 김재원 · 박재완 · 심재철 · 권경석 · 곽성문 · 안상수 · 김성조 · 정갑윤 · 이상득 · 임인배 · 배일도 · 이상배 · 고조홍 · 엄호성 · 이인기 의원 발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혜석 의원 대표발의)

(2005. 9. 20 서혜석 · 배일도 · 엄호성 · 이윤성 · 최규성 · 이영호 · 이근식 · 김태년 · 황우여 · 김우남 · 우제창 · 조경태 · 박재완 · 조일현 · 이은영 · 신기남 · 임종석 · 한병도 · 정청래 · 우제항 · 심재철 · 김종률 · 주승용 · 이광철 의원 발의)

郵遞局預金 · 保險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5. 6. 24 김석준 · 이성권 · 곽성문 · 정의화 · 이혜훈 · 김영선 · 김정부 · 김정훈 · 정문현 · 강재섭 의원 발의)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原子力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6. 21 정부 제출)

기상관측표준화법안

(2005. 6. 8 정부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5. 5. 30 정부 제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05. 5. 6 정부 제출)

(이상 10건 수정하여 의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5. 8. 10 김양수 · 정갑윤 · 최규성 · 심재엽 · 최인기 · 채수찬 · 우제창 · 김종률 · 박승환 · 김명주 · 이계안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창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홍창선 · 장영달 · 정갑윤 · 민병두 · 선병렬 · 서혜석 · 최규성 · 이낙연 · 이계진 · 유인태 · 박명광 · 이인영 · 김낙순 · 김태홍 · 이목희 · 안상수 · 이종걸 · 김석준 · 이은영 · 엄호성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김정훈 · 이혜훈 · 박재완 · 박세환 · 안경률 · 임태희 · 심재철 · 정병국 · 박찬숙 · 김양수 · 이인기 · 정성호 · 박상돈 · 김재원 · 이근식 의원 발의)

電子署名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5. 5. 27 이종걸 · 김재홍 · 허태열 · 서혜석 · 이영호 · 강창일 · 문학진 · 김종률 · 유승희 · 강기정 · 염동연 · 배일도 · 최재성 · 박명광 · 정청래 · 박재완 · 황우여 · 권선택 · 임종석 · 양승조 · 변재일 · 안민석 의원 발의)

電子署名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5. 8. 10 김양수 · 정갑윤 · 최규성 · 심재엽 · 최인기 · 채수찬 · 우제창 · 김종률 · 박승환 · 김명주 · 이계안 의원 발의)

電子署名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11 정부 제출)

정보격차해소에關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05. 4. 7 유승희·강성중·권선택·김낙순·김영주·김태년·김태홍·김희선·노영민·노용래·문학진·민병두·배기선·변재일·서혜석·선병렬·안민석·안병엽·오영식·우원식·유시민·유정복·윤원호·윤호중·이근식·이목희·이영호·임종인·장경수·장영달·장향숙·전병현·제종길·조일현·지병문·진영·최성·한병도·홍미영 의원 발의)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5. 4. 22 이혜훈·박세환·엄호성·황우여·박찬숙·김재경·이인기·유정복·김희정·최경환·김재원 의원 발의)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05. 7. 7 김희정·권철현·김재경·이성권·김석준·엄호성·이해봉·염동연·이재웅·박재완·정희수·황우여·박세환·정병국·서혜석·김재원·류근찬·안상수·정문현·신중식·고조홍·유정복·이상경·김애실·이혜훈·이낙연·박명광 의원 발의)

電氣通信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6. 1 김영선·공성진·김재원·박승환·김선미·이윤성·나경원·정병국·박재완·김재경·고홍길·서병수·김효석·고조홍·배일도·신상진·안상수·이성구·안병엽 의원 발의)

電氣通信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2005. 7. 18 심재엽·노영민·김정훈·김종률·채수찬·최인기·최규성·김양수·김명주·이시종·이목희·이계안·김재원·정갑윤·이해봉·박승환·김석준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5. 6. 1 변재일·우제항·노영민·유승희·강혜숙·김효석·이시종·김종률·염동연·김우남·양형일·유재건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05. 7. 18 김희정·김재경·윤건영·안상수·박재완·김재원·최인기·이낙연·김재윤·박상돈·김양수·정성호·이인기·이계

경·김영춘·이혜훈·나경원·김석준·고조홍·엄호성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염동연·김낙순·권선택·김영선·김효석·박기춘·변재일·안병엽·양형일·우제항·유승희·서혜석 의원 발의)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5. 5. 25 김석준·서재관·공성진·김부겸·이계경·김재경·이광철·정병국·김정부·황우여·이혜훈 의원 발의)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05. 6. 1 김희정·이상경·안홍준·이성권·김재경·주승용·최성·염동연·박재완·강길부·고조홍·배일도·엄호성·정희수·신국환·홍창선·이혜훈·황우여·이근식 의원 발의)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

(2005. 6. 8 정부 제출)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서혜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서혜석·김태홍·염동연·이계경·엄호성·김명자·권선택·강창일·한명숙·이해봉·김재윤·이성권·박찬석·박재완·김희정·우제창·홍창선·이인기·심재철·안상수·박상돈·정성호·김종률 의원 발의)

(이상 1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8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4. 12. 28 민병두·이광철·김태홍·정청래·이은영·우상호·이미경·김재홍·윤원호·안민석·한명숙·정병국·이계진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5 정부 제출)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6. 8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

물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5. 6. 27 김우남 · 박세환 · 강창일 · 김명주 · 엄호성 · 김재윤 · 배일도 · 이시중 · 김태년 · 제종길 · 박기춘 · 신국환 · 류근찬 · 이원영 · 김태홍 · 이영호 · 이인기 · 신중식 · 강기정 · 김영덕 · 김낙성 · 안상수 · 조일현 · 이인영 · 서재관 의원 발의)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김낙성 · 신중식 · 김우남 · 홍문표 · 조일현 · 이인제 · 류근찬 · 심재덕 · 김재원 · 김영덕 · 이정일 · 강기갑 · 이시중 의원 발의)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6 유선호 · 임종인 · 김춘진 · 노영민 · 우윤근 · 조배숙 · 최인기 · 김재윤 · 김태년 · 신중식 · 김태홍 · 강혜숙 의원 발의)

船舶職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5. 6. 30 이영호 · 이상배 · 신학용 · 신중식 · 노영민 · 노웅래 · 한광원 · 최성 · 이시중 · 한병도 · 김정훈 · 이정일 · 이상민 · 김선미 · 윤원호 · 김희선 · 김기현 · 김재윤 · 조일현 · 강창일 · 김우남 의원 발의)

導船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4. 27 정부 제출)

船舶職員法 일부개정법률안

導船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1. 3 정부 제출)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1 제종길 · 김부겸 · 조정태 · 안상수 · 노현송 · 엄호성 · 강혜숙 · 우원식 · 김영덕 · 배일도 · 홍미영 · 신상진 · 이목희 · 임종인 · 김태홍 의원 발의)

技能獎勵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8. 30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技能大學法 일부개정법률안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0. 18 정부 제출)

職業安定法中改正法律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4. 12. 2 배일도 · 서병수 · 엄호성 · 김덕규 · 안상수 · 김원용 · 정성호 · 박재완 · 이재오 · 서재관 · 오제세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정두언 · 김재경 · 이계경 · 임태희 · 이해봉 · 박세환 · 신상진 · 김재원 · 엄호성 · 안상수 · 정성호 · 최규식 · 박재완 · 고조홍 · 안민석 · 이은영 · 나경원 · 이경재 · 박승환 의원 발의)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김영주 · 강길부 · 박영선 · 정봉주 · 장향숙 · 장복심 · 임종석 · 신상진 · 김형주 · 우원식 · 이상경 · 단병호 의원 발의)

騒音 · 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김영주 · 강길부 · 박영선 · 정봉주 · 제종길 · 장향숙 · 장복심 · 임종석 · 신상진 · 김형주 · 우원식 · 이상경 · 단병호 의원 발의)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7 정부 제출)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 정부 제출)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5 김선미 · 신학용 · 김동철 · 김우남 · 오영식 · 김재윤 · 한광원 · 이영호 · 윤원호 · 김현미 · 백원우 · 제종길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6 정부 제출)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7. 22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의設立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2005. 7. 4 제종길 · 이경재 · 김영주 · 김형주 · 단병호 · 우원식 · 공성진 · 이목희 · 장복심 · 조정식 · 김교홍 · 김덕규 · 김선미 · 김우남 · 김종률 · 김태홍 · 노현송 · 서혜석 · 엄호성 · 유승희 · 이상경 의원 발의)

(이상 12건 수정하여 의결)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 발의)

(2004. 7. 20 김석준 · 임태희 · 정문헌 · 이군현 · 박계동 · 유기준 · 이인기 · 제종길 · 박종근 · 정종복 · 이계경 · 신중식 · 이성권 의원 발의)

環境紛爭調停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05. 10. 25 김선미 · 신학용 · 문병호 · 제종길 · 김재윤 · 한광원 · 이영호 · 김우남 · 오영식 · 윤원호 · 김동철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 발의)

(2005. 8. 17 김애실 · 이계경 · 정두언 · 김태환 · 이성권 · 엄호성 · 이해봉 · 전재희 · 이은영 · 이재오 · 박계동 · 박찬숙 · 김석준 · 서병수 · 고조흥 · 정희수 · 안상수 · 김충환 · 배일도 · 이원영 · 정화원 · 김태년 · 김문수 · 김영숙 · 이혜훈 · 홍미영 · 최순영 · 박재완 · 김희정 · 이경숙 · 박종근 · 황우여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 발의)

(2005. 10. 27 박찬숙 · 이명규 · 손봉숙 · 김애실 · 나경원 · 신상진 · 이주호 · 박세환 · 김재원 · 엄호성 · 공성진 · 김태년 · 황우여 · 고조흥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 정부 제출)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

(2005. 7. 18 김희정 · 김재경 · 윤건영 · 안상수 · 박재완 · 김재원 · 최인기 · 이낙연 · 김재윤 · 김양수 · 이근식 · 정성호 · 이계경 · 김영춘 · 이혜훈 · 나경원 · 김석준 · 고조흥 · 엄호성 의원 발의)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 발의)

(2005. 7. 20 이목희 · 강창일 · 우원식 · 정봉주 · 강혜숙 · 이해봉 · 서재관 · 조정식 · 서혜석 · 김재홍 · 최인기 · 김재윤 · 한광원 · 장복심 · 김태홍 · 백원우 · 김형주 · 제종길 · 임종석 · 오제세 · 신상진 · 공성진 의원 발의)

環境技術開發 및 지원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23 정부 제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

표 발의)

(2005. 7. 20 이목희 · 우제창 · 채수찬 · 이계안 · 조정식 · 김종률 · 최규성 · 배일도 · 장복심 · 김태홍 · 이시중 · 김혁규 · 심재엽 · 최인기 · 제종길 · 박승환 의원 발의)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 발의)

(2005. 7. 20 장복심 · 박상돈 · 한광원 · 김태년 · 김영춘 · 조정식 · 김기석 · 이호용 · 제종길 · 한병도 · 우윤근 · 신중식 · 노영민 · 오제세 · 이목희 · 김성곤 · 이광철 · 선병렬 · 최인기 · 김형주 · 김원용 · 이시중 의원 발의)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 발의)

(2005. 8. 16 염동연 · 김낙순 · 김종률 · 노현송 · 박상돈 · 박재완 · 박찬숙 · 신상진 · 서갑원 · 안상수 · 이근식 · 이시중 · 이영호 · 조일현 · 우제창 · 엄호성 · 정성호 · 최인기 · 한광원 · 황우여 의원 발의)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3 정부 제출)

水道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04. 6. 28 정병국 · 남경필 · 이해봉 · 김우남 · 서병수 · 신중식 · 엄호성 · 이재오 · 박승환 · 박성범 · 전여옥 · 고진화 · 권경석 · 노현송 · 박찬숙 · 염동연 · 박재완 · 제종길 · 선병렬 · 전병현 · 김기현 · 배일도 · 김혁규 · 이인기 · 노용래 · 허태열 · 유정복 · 신국환 · 김영춘 · 황우여 의원 발의)

水道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04. 8. 26 서병수 · 윤건영 · 심재철 · 황우여 · 김덕규 · 김영선 · 송영길 · 단병호 · 이근식 · 허천 · 김태년 · 유기준 · 신국환 · 김재원 · 박순자 · 유시민 · 전여옥 · 김영춘 · 이종구 · 홍미영 · 정병국 · 정성호 · 정종복 · 김양수 · 박성범 · 이상득 · 이해봉 · 엄호성 · 김영덕 · 이인기 · 정화원 의원 발의)

水道法中改正法律案(허태열 의원 대표 발의)

(2004. 11. 3 허태열 · 이윤성 · 한선교 · 서병수 · 백원우 · 안상수 · 정문헌 · 이해봉 · 이인기 · 김태환 · 김양수 · 엄호성 · 김재윤 · 유필우 · 유정복 · 안경률 · 안택수 · 박형준 · 박승환 · 김덕규 의원 발의)

水道法中改正法律案(고진화 의원 대표 발의)

(2004. 12. 27 고진화 · 김부겸 · 류근찬 · 이호

웅·김교홍·권오을·이재오·홍준표·신학
용·오제세·배일도 의원 발의)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5. 4. 4 이낙연·김효석·노현송·박성
범·박순자·박재완·서재관·신중식·엄호
성·유정복·이원영·이해봉·이해훈·장경
수·정두언·조경태·최인기·허태열·홍창
선 의원 발의)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7 정부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7 우원식·김영주·김형주·노영
민·단병호·우윤근·이목희·장복심·정청
래·제종길·조정식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2005. 11. 7 정부 제출)

(이상 2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
한 대안 제출)

이상 34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
원 대표발의)

(2005. 10. 25 조경태·이호웅·정장선·이장
래·박상돈·서재관·노영민·장경수·김동
철·장향숙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05. 5. 25 김학송·진수희·김양수·김명
주·김영덕·권경석·김정권·안홍준·허태
열·김정부·최구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道路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21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女性發展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05. 7. 12 정부 제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5. 8. 18 이경숙·유시민·박세환·안민

석·박찬숙·이재오·엄호성·이원영·김태
년·김희선·강혜숙·서갑원·서혜석·장향
숙·김현미·정청래·박상돈·심재덕·한광
원·배일도·한명숙·유승희·장영달·홍미
영·조배숙·최순영·이미경·이은영·최규
성·민병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
표발의)

(2005. 7. 29 김희정·나경원·김석준·황우
여·김재경·엄호성·이해봉·최재성·김학
송·안상수·박재완·최인기·이계경·정희
수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
표발의)

(2005. 8. 16 손봉숙·이해봉·심재철·박재
완·현애자·최인기·정희수·김학송·박상
돈·이재오·이정일·정성호·신상진·이원
영·이시중·엄호성·정청래·김석준·황우
여·김애실·김홍일·이해훈·고조홍·서재
관·김태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
표발의)

(2005. 9. 30 이경숙·노회찬·이계안·조배
숙·홍미영·김현미·최순영·이영순·현애
자·오영식·유승희·배일도·이해봉·김태
년·최인기·조성래·김재홍·주승용·한명
숙·이계경·정두언·엄호성·강혜숙·안민
석·조경태·안상수·박찬숙 의원 발의)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5. 6. 4 김효석·한화갑·최인기·송영길·
이계안·이낙연·이상열·김홍일·이정일·
손봉숙·신중식 의원 발의)

6월 24일 발의자 철회 요구, 12월 7일 철회

○청원 제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05. 12. 2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성훈 외 6인으로써
박재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경상대학교 교명변경에 관한 청원

(2005. 12. 5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
학교 총장 조무제로부터 김재경 의원 외 33
인의 소개로 제출)

12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및 국군포로 한만택 복
송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2005. 12. 5 김문수 의원 외 94인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용산기지이전협정 환경조항에 관한 질문서에 대
한 답변서

(2005. 11. 30 정부 제출)

국가영어평가시험 개발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
한 답변서

(2005. 12. 2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공적자금운용현황 보고서

(2005. 12. 6 정부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